

-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30호

다. 제출일자 : 2018. 8. 16.

라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2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재정관리담당관(재정계획심의위원회) : 원안가결

(2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3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없음

(4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완료

(5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6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평가제외

(7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
라. 입법예고

○ 기간 : 2018. 7. 5. ~ 2018. 7.25.

○ 제출의견 :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”도록 한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에 따라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의 존속기한을
“2023년 12월 31일까지”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『지방재정법』 관련 규정(2014.5.28.)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『도시철도법』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『지방자치법』 제126조제2항¹⁾의 규정에 의해 1993년 9월 『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』²⁾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

1) 제126조(회계의 구분)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2) 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- 동 조례 제정 당시부터 동 회계에 대한 별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4년 5월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개정 내용에 따라 동 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바,

조례 개정을 통해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- 동 회계의 '18년 기준 예산규모는 1조 1,650억원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, 9호선 3단계 건설, 신림선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,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1~8호선 노후시설 개선을 포함한 운영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도시철도망 확충과 지하철 이용안전을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·운용되고 있음

* 참고 :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항목

세입	세출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용자금 2. 국고보조금 및 정부용자금 3. 지방채 수입금 4.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5.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6.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7.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	1.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 2.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3. 용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.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.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. 기타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

-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교통사각 지대에 대한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노후화된 지하철 1~8호선에 대한 안전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안전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